

고시반 내규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고시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고시반운영위원회)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"법과대학고시반운영위원회"를 둔다. 그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조 (고시반) ① 고시반은 고시지도교수 1인, 고시지도부장1인, 고시조교 2인 및 입실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고시반에는 고시지도교수 통할하에 양진재, 준선재(이하 '고시실'이라 한다)를 둔다.

③ 고시실에는 고시조교를 보좌하여 실원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각 실에 실장을 둔다. 실장은 고시조교의 제청에 의하여 고시지도교수가 임명한다.

제 4 조 (고시지도교수) ① 고시지도교수는 고시반사무를 관장하며 고시지도부장, 고시조교 및 입실원을 통할한다.

② 고시지도교수는 고시반의 운영 및 입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고시조교) ① 고시지도부장은 고시지도교수를 보좌하여 고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② 고시지도부장 및 고시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고시지도부장은 고시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고시조교는 고시지도부장을 보좌하여 고시반사무를 집행하고 특강, 스터디그룹 및 고시실을 관리·감독한다.

⑤ 고시조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의고사 및 장학고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시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부분을 법과대학 교수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⑥ 고시조교는 시험일정, 각종신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한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고시실) ① 준선재에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, 졸업생 및 모의고사 성적우수자 순으로 입실하도록 한다.

② 양진재는 재학생 중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입실하도록 한다.

③ 우수장학생은 양진재에 입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입 실

제 7 조 (입실자격) 법대고시실에 입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사법시험 1차 합격자
2.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
3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
제 8 조 (입실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입실원은 고시반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입실원은 고시반규정을 준수하고 고시반 시설물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, 고시반가 실시하는 모의고사 및 특강에 참여하여야 한다.

- 제 9 조 (출석점검) ① 고시조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5회 출석을 점검하여야 하고 매월 그 결과를 고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출석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실시한다.
- ③ 입실원이 본인의 질병, 경조사, 수업, 스터디 및 기타 고시조교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서를 고시조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졸업생) 삭제

제 3 장 모의고사 및 특강

- 제11조 (통칙) ① 모의고사 및 특강(이하 '모의고사 등'이라 한다)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반 운영일정에 따라 시행된다.
- ② 모의고사 등은 실시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본인의 질병, 경조사 기타 고시조교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의고사 등에 응시하거나 수강할 수 없다.

- 제 12 조 (모의고사) ① 모의고사는 사법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한다.
- ② 모의고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③ 모의고사성적은 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고시지도부장 또는 고시조교는 이를 고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모의고사성적은 고시반, 기숙사 입사 및 장학금지급의 기준이 된다. 다만, 제6조 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13 조 (특 강) 특강은 경희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고시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학교 학생에게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4 장 장학금

제 14 조 (장학금) 고시지도교수는 모의고사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 15 조 (이종수혜 및 장학금 지급금지) ① 이종으로 장학금을 수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② 수혜대상자가 스스로 퇴실하거나 퇴실조치되는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.

제 5 장 규정의 개정

제 16 조 (규정의 개정제안 및 의결) 규정의 개정은 고시지도교수의 발의로 제안하며, 법과대학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제 6 장 벌 칙

- 제 17 조 (경고조치) 고시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1. 고시반 도서 및 잡지, 강의테이프(비디오테이프 포함)의 반환일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
 2. 무단으로 주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자

3. 배정된 좌석으로부터 임의로 이동한 자
4.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자
5.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제 18 조 (퇴실명령) ① 고시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
1. 고시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파괴한 자
 2. 3회에 걸쳐 경고조치를 받은 자
 3. 정당한 사유없이 모의고사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
-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에 의하여 퇴실하거나 퇴실명령을 받은 자는 1년간 입실할 수 없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제9조 1항의 예외) 졸업생은 공고일로부터 3년까지 입실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위 규정은 2001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시행일) 위 규정은 200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3 조 (제9조의 예외) 졸업생은 공고일로부터 3년간 입실할 수 있다.